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2 선고 2020가단14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준(소송구조)

피 고 1. B

2. C(개명후: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E

3. 주식회사 F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7. 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중 89,172,900분의 12,639,736.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와

2018. 7. 20. 접수 제319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중 24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와 2017. 3. 15. 접수 제10903호, 2017. 3. 15. 접수 제10905호 및 2017. 3. 15. 접수 제109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C: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제2 토지 중 24분의 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와 2017. 3. 15. 접수 제10905호 및 2017. 3. 15. 접수 제109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1 토지 중 89,172,900분의 12,639,736.8 지분에 관하여, 제2토지 중 24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1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3. G와 사이에, '원고와 G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쌍방의 합의 하에 처리하고, 피고 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각 50%씩 나누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7. 20. 제1 토지 중 89,172,900분의 15,799,67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지분 중 89,172,900분의 12,639,736.8 지분에 관하여 2018. 7. 20. 매매(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3. 15. 제2 토지 중 24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중 24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그 중 24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3. 9. 매매(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산 재산의 50%를 분배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동의 없이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회사 지분을 대표이사인 G의 외사촌인 피고 B, C에게 제1, 2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고, 위 피고들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재산분배에 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자 통정에 기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피고 회사는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회사 지분이 유일한 재산임에도 주주인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재산인 위 각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회사법상으로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 C은 피고 회사에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B, C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B, C에 대한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채무자인 피고 회사를 대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인 원고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피고 B, D)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B, C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다, 피고 회사가 위 각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등을 피고 B, C으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G와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G가 위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 내용의 문언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와 G가 각각 50%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인바, 원고가 분배받을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재산의 내용과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앞으로 마쳐졌다가 피고 B, C에게 이전된 제1, 2토지에 관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곧바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경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제1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일약 11009㎡

피고	발소 및 이전할 지분
[]	[]의 지분 12,639,736.8/89,172,900 전부

제2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일약 685㎡

피고	발소 및 이전할 지분
[]	[]의 지분 13/24 전부
[]	[]의 지분 5/24 전부

- 끝 -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대상을 이와 같이 선택한다.